

의안 번호	1664	【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】 심사보고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: 2020. 10. 6.(화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0. 10. 6.(화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0. 10.15.(목)

2. 제안설명 요지(기획예산실장 김영환)

가. 제안이유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개정으로 구 소속 국장 직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국장 직위 증가에 따른 위원회 위원수 확대(안 제4조제1항)
 - 위원수 12명 → 13명
- 당연직 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(안 제4조제3항)
 - 당연직 위원: 각 국의 국장, 규제개혁업무 담당 부서장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

다. 근거법규

-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3조제3항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조영숙)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개정으로 구 소속 국장 인원 증가에 따라 이를 반영한 사항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연직 위원수 조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, 「행정규제기본법」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,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적합하므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거법규

행정규제기본법

제3조(적용 범위)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6. 5. 29., 2017. 11. 28.>

- 1.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
- 2. 형사(刑事), 행형(行刑)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
- 2의2. 과징금,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
- 3. 「국가정보원법」에 따른 정보·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
- 4. 「병역법」, 「통합방위법」, 「예비군법」, 「민방위기본법」, 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 및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에 규정된 징집·소집·동원·훈련에 관한 사항
- 5. 군사시설,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
- 6. 조세(租稅)의 종목·세율·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

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·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(公表),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, 기존규제의 정비,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